

부패방지정책

제 1 조 목적

본 부패방지정책(이하 “**본 정책**”)은 (주)YG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의 「규범 준수 및 부패 방지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으로, “회사” 및 임직원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금전, 유가증권(수표, 상품권 등),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② 음식물, 주류, 골프, 오락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관광 등의 편의 제공
 -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④ 그 가치가 비금전적 성격이더라도 가치가 있는 모든 것 (고용 또는 인턴십 제안 등)
2. “**부정한 목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회사”가 특정 사업 관련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 ②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공직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
 - ③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 ④ 부적절한 활동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 ⑤ “회사” 임직원 자신의 이익 또는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 ⑥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부정한 목적
3. “**부패행위**”란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품 등”의 수수 및 강요, 부정청탁 등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4. “**공무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① 정부의 관료 직원 또는 공식 대리인
 - ② 국제기구의 관리, 직원 또는 기타 대표자

- ③ 정부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를 위해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 ④ 정당 소속 정치인, 당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
 - 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개인
5.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등 “회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한다.
 6. “**비즈니스 파트너**”란 “회사”와 거래 또는 업무 관계가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회사, 단체, 그에 속한 개인을 통칭한다.

제 3 조 기본 원칙

1. 임직원은 부패 방지를 핵심 가치로 추구하며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고 “부패 행위”로 “회사”의 평판을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를 금지하며,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위협이나 강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정책”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일탈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임직원에 대한 위협이나 강압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에 가능한 빨리 상황을 완전하고 진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직원은 부정 혹은 부패의 의도가 없는 행위도 반부패 법규 기타 법령 또는 “본 정책” 상 “부패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4. 임직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뇌물 방지 규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반부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 (Bribery Act)」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반부패 법규 및 국제협약(「OECD 뇌물방지협약」과 「UN 반부패협약」 등)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어떤 행위가 관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패방지 법규와 “본 정책”의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음을 이해한다.

제 4 조 행동 수칙

1. **금품 등의 제공**
 - ① 임직원은 사업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3 자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제안·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품 등”의 제공 방식에는 금전 지급, 현물 지급, 리베이트, 비밀 커미션 지급, 비공식 수수료 지급 등이 전부 포함된다.

- ② 임직원은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맺기를 희망하는 제 3 자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위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그와 관련한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우호적인 사업관계를 형성 또는 유지하거나 정당한 사업상의 목적을 위해 선물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에 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있다.
 - 1)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의 홍보 관련 선물
 - 2)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기념품으로서 소소한 선물 수준의 물품
 - 3)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비용과 빈도 내에서 경조금 (화훼, 화환 포함)
 - 4) 회의 시 간소한 수준의 식음료
- ④ 전항의 경우, 임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존중, 감사, 호의의 표시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금품 등” 중 현금이나 현금성 등가물의 수수는 사유 불문하고 금지된다.
 - 3) 유흥업소나 도박장소에서의 접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 ⑤ 임직원이 거래 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제 3 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 3 자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2. “공무원”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본 정책”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은 뇌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 임직원은 그 판단이 어려울 경우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 1) 해당 “금품 등”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본 정책”에서 허용될 것;

- 2)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을 것;
- 3) 해당 "금품 등"의 제공 형태, 횟수 및 가치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며 "회사"의 이미지, 명예, 명성,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 4) 지출 내역이 합리적으로 상세한 수준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할 것

3. 부정 청탁

-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사유 불문하고(업무 관련 목적, "부정한 목적" 포함)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업무상 우월적·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하며, "이해관계자" "회사" 또는 제 3 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제 3 자로부터 사유 불문하고(업무 관련 목적, "부정한 목적" 포함) 부정한 청탁을 제안 받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4. 기부 및 후원

- ① 임직원은 "회사"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현금 기타 유·무형의 자산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부 또는 후원을 할 경우, "회사"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정부 또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 또는 후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개인 자유 시간과 비용, 자원을 이용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정치적 참여를 위해 "회사"의 조직, 인력, 자산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비즈니스 파트너

1.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대한 반부패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하거나 파트너 관계를 지속할 시 상대방의 자격, 평판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거래와 관련하여 반부패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부패방지에 대한 약속, 진술 보증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3. 임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정책"과 부패방지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본 정책" 및 「비즈니스 파트너 행동규범」을 고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행동규범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임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패 행위" 또는 "부패 행위"가 예상되는 리스크가 발견되면 즉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는 사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6 조 기록 등

"회사"의 모든 거래는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문서화하거나 기록하여야 하며, "금품 등"의 수수는 항상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조 대응 수칙

1. 임직원은 특정 행위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규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행동에 앞서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의 의견을 구한다.
2. 임직원이 "금품 등" 지급 요청에 대해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규를 준수하여 대응한 결과로 "회사"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정당한 행동을 취한 임직원이 평가, 보상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입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내부 신고 및 불이익 금지

1. 임직원은 "회사"의 다른 임직원이 "본 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의 내부 신고 시스템 또는 내부 감사 담당 부서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 신고 관련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이 "본 정책"을 준수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금품 등" 제공 요구를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정당한 행동을 취한 임직원이 평가, 보상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입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본 정책 위반의 결과

"본 정책" 위반은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는 임직원의 행위가 반부패 법규 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우 법집행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은 반부패 법규 위반 시 벌금이나 자유형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본 정책은 2023년 12월 15일부로 시행한다.